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6 선고 2019가단5638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창주, 정익우

변 론 종 결 2021. 1. 29.

판 결 선 고 2021. 2.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28,871,741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871,74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아래 내용의 이 법원 2009. 9. 30.자 2009차10190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2009. 10. 27. 확정되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6,878,706원 및 그중 5,858,639원에 대한 200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3. 4. 15.	2013. 4. 10. 매매	소유자 C
7	소유권이전	2016. 2. 15.	2016. 1. 28. 증여	소유자 E
8	소유권이전	2017. 10. 30.	2017. 9. 10. 상속	소유자 F
8-1	8번 소유권경청	2018. 5. 3.	신청착오	공유자 지분 7분의 3 F 지분 7분의 2 D 지분 7분의 2 C
8-2	8번 소유권경청	2018. 5. 3.	2017. 10. 27.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소유자 C

※ E은 피고의 아들이고, F은 피고의 며느리(E의 처), D은 피고의 남편임

다. D은 현재 자력이 없다.

【증거】갑 제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5. 3.자로 D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진 이상 D의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그 이후 그 지분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양도된 것은 D의 재산감소의 효과가 있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10년의 시효소멸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12. 11.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D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G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 11. 26.자 2009타채40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D의 채무자인 H조합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 12. 12.자 2017타채658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갑 제3호증 참조),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는 또,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매수하여 소유하였다가 부양의 조건으로 아들인 I에게 증여하였으나, I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져 책임재산이 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D의 채무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J조합의 근저당설정등기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2020. 8. 2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101,581,000원이므로(감정평가서 참조), D 지분의 가액은 29,023,140원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피보전채권액은 28,871,741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28,871,741원을 한도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 범위가 정해진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28,871,741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8,871,74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민사 법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강영훈

별지